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33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다33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나12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4가합3606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건물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돈억, 이대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김성희, 박세정

판결 선고2020. 7. 23.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나12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이 사건 상가건물 D호에 부합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D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불법건축물도 양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로의 부합에 관한 법리,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승계이전에 관한 법리,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태악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